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승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88

발의연월일: 2024. 6. 14.

발 의 자: 김승수 · 김예지 · 임이자

우재준 · 성일종 · 박충권

주호영 · 신성범 · 이종배

박덕흠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, 현행 규정에 따르면 체납에 따른 간접강제수단 적용이 어려워 과징금 체납 시 체납을 해소할 수 있는 징수수단이 충분하지 않으며,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와 지방행정제재부과 금법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간 징수수단이 상이하여 업무상 혼돈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한편, 현행법에서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성교육 및 성폭력·성매매·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부과·징수권자 및 위임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는 지적 역시 제

기되고 있음.

이에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행정제재 부과금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일관된 체납징수수 단 활용을 통한 행정제재금의 부과 목적을 실현하고 징수율을 제고하 려는 것이며,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성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 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· 징수권자를 명확히 하고 관련 위임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34 조 및 제41조).

법률 제 호

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제3항 중 "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"를 "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「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"로한다.

제41조제4항 중 "제1항 및 제2항에"를 "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34조(과징금 부과) ①・② (생	제34조(과징금 부과) ①・② (현		
략)	행과 같음)		
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	3		
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			
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			
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<u>국</u>	<u>न</u>		
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	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「지방		
<u>에</u> 따라 이를 징수한다.	행정제재 • 부과금의 징수 등에		
	<u>관한 법률」에</u>		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		
제41조(과태료) ① ~ ③ (생	제41조(과태료) ① ~ ③ (현행과		
략)	같음)		
④ <u>제1항 및 제2항에</u> 따른 과	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		
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	<u>정에</u>		
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			
이 부과・징수한다.			